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한국방재협회장

1. 신청인

법인명	(주)비전테크 (대표 김채원, 이호석)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80111-*****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63(회동동)

2. 기술명 : 낮은 저항을 구성하여 누설전류를 포집하는 누설전류제한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통전 중인 전기설비가 습기, 누수, 결로 및 극한 호우등의 침수로 인하여 전기의 단락 및 누설전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대응기술로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 기술 및 제품임.

4. 기술범위

- (1) 낮은 저항을 구성하여 누설전류를 포집하는 누설전류제한 기술이 적용된 LED조명기구 (2) 낮은 저항을 구성하여 누설전류를 포집하는 누설전류제한 기술이 적용된 단자대 (3) 낮은 저항을 구성하여 누설전류를 포집하는 누설전

류제한 기술이 적용된 분전반 (4) 낮은 저항을 구성하여 누설전류를 포집하는 누설전류제한 기술이 적용된 콘센트 및 플러그

5.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02-6952-9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이해관계인 의견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나. 이해관계인 서약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붙임1 서식)

다. 신청서 열람 요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라. '가'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 자료

7. 제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02-6952-9388)

※ 이해관계인 의견 반려 사항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